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17.

의안 번호	132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3. 이도희 의원 대표발의(8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3. 3. 17.)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이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운영 등(안 제5조 ~ 안 제8조)

◯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안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 예산조치: 논의 필요

◯ 입법예고: 해당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본 조례안 중 주요 사안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은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1]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법 제8조제1항이 말하는 바와 같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있기에 임의적이고 선택적인 사항이나, 타 자치구들 중 일부가 시행계획 사항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여 조례 입법구성상 반영한 것으로 보여 큰 문제는 없을 것임.

○ **안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운영)** 중 안 제2항을 보면, 위탁사항이 반영되어있음.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여지를 규정한 것인데, 이는 아래 법령 규정과 같이 자치법규 위임사항임.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안 제7조제9호**의 내용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1) 법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각각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관할 시·도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은 개정되지 않은 현행 조례와 부합하지 않고,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실정이니,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자칫 자살예방 관련 전부개정안이 의결되지 않는다 하여도 현재 해당부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어 제10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여지는 있을 것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6조(자살예방 등을 위한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마련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 지원
8.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만, 입안자가 “자살예방 관련 전부개정조례안”이 같은 회기 상정됨을 전망하고 본 조례안에 해당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니, “자살예방 관련 전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임.

○ **안 제9조(위원회 설치·운영 등)** 중 제5항은 “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본 조의 “정신건강센터 운영위원회”는 법 제53조가 지칭하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이중적으로 함께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법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개정 2019. 4. 23.>

1.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1의2. 제52조제4항 및 제66조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2.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3.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4.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 제4항 중 제3호가 규정하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속에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의 활동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안 제6항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하여 지난 제309회 임시회 때 의결된 조례를 명기하며, 입법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음.

□ **비용추계** 사항을 검토해 보면, 연간 11억6,264만8천원이 소요됨.

○ 2023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85,640천원(시비 42,820, 구비 42,820)을 편성하여 센터운영에 집행하고 있으며,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305,960천원(정부기금 152,980, 시비 76,490, 구비 76,490)을 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을 배치하고홍보, 교육, 정신과의사 상담, 치료비 지원 등에 집행하고 있음.

○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구비 681,976천원을 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 3명 배치, 센터 임차료, 상담 및 홍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집행하고 있음

○ 이외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89,072천원(국비 44,536, 시비 22,268, 구비 22,268)을 편성하여 등록 정신장애인 834명을 치료하는데,

집행하고 있음.

- 이 사업비는 본 조례안 제8조(예산지원 등) 제2항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후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중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등의 치료비와 연관되는 것임.

- 이는 법률에 의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조례상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구비 부담 증액이나 별도 추가사업이 필요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례안에 반영한 사항이므로 반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임.

□ 본 조례안은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와 같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심리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음에도 입법이 지연된 것으로, 입법이 필요한 실정임.

- 다소 부족한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향후 검토 및 연구를 통해 입법과제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이도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

발의연월일: 2023. 3. 3.

발 의 자: 이도희·김광심·김형곤·우종혁·박다미·안지연·복진경·김현정 의원 (이상8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운영 등(안 제5조 ~ 안 제8조)

라.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

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정신건강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

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심리지원센터(이하 “청소년심리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심리지원센터(이하 “정신건강센터”라 한다)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신건강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음주나 폭력 등으로 정신건강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수행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신건강에 관한 지역사회 진단 및 기획

2.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활동

3.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 및 의뢰체계 구축·연계

4.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6. 정신건강 위기대응 업무 및 지역 협력체계 운영·지원

7. 재난심리지원 등 일반인·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현안업무

8.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소년심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 맞춤형 심리 상담 및 치료, 교육,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의 부모 및 양육자 대상 심리교육 및 상담,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4. 학원가 등 지역특화 정신건강증진사업

5.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의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후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센터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정신건강증진 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해 심의한다.

1. 정신건강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센터의 사업추진 평가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 심리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